#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02

발의연월일: 2023. 4. 24.

발 의 자:김종민·이장섭·김영배

윤영덕 • 김영호 • 김용민

윤미향 • 오기형 • 홍성국

박용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등장 이후 이를 거래하는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상장에서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 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 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 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하 도록 함(안 제5조).
- 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거래정보 수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 10조).
- 마. 가상자산업자가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에 상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기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 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 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
- 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

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 법」을 준용함(안 제21조).

법률 제 호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 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안심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상자산"이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그 밖에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가상자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 및 대행하거나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업자가 수행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이용자"란 가상자산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5.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또는 가상자산 간 교 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2장 이용자 보호

- 제5조(예치금의 별도예치) ① 가상자산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 는 신탁한 가상자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 1.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 2. 이용자가 소유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② 가상자산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

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가상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업자는 이용 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8조를 위반한 행

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0조(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수집, 분배, 공시 등(이하 "가상자산거래정보 수집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가상자산거래정보 수집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수집
  - 2. 가상자산거래정보의 표준화 및 가공
  - 3. 가상자산거래정보의 분배
  -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 의 수집
  - 5. 가상자산업자가 관리하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저장위치 등 정보의 수집
  - 6.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정보 관련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③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한다.
  - ④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가상자

산거래정보 수집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의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1. 임원 및 가상자산거래정보 수집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 바.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2조(지정취소)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가상자산거래정보 수집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가상자산 상장의 적정성 확보) ①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상장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내부규정
- 2.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
- 3. 가상자산업자가 수령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및 관련 규정
- 4. 그 밖에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암호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공모하여 매도하는 행위
-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암호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공모하여 매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④ 가상자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생성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 제15조(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업자의 업무를 검사할 수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경고
- 3. 주의
-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자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자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가상자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가상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업자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아 가 상자산업자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할 때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금융위원회는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 ② 조사공무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를 준용한다.
  - ③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조사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 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8조(가상자산거래의 중지)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가 제14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되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가상자산거래의 중지를 가상자산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상자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가상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중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가상자산거래가 중지된 이용자,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거래 중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가 중지된 이용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상자산거래 중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가 중지된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중지의 절차·통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벌칙

제19조(벌칙) ①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 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4조를 위반한 자가 제3자의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차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조(몰수・추징) ① 제14조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

-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②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기간에 취득·제공 또는 제공하려 한 재산이 그 금액 및 취득·제공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 추정한다.
- 제21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 제5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 6. 제15조에 따른 검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